•

```
1.
 가.
             : 2004 7 2
       : 2004 7 2
                          (2004 7 8 )
  · 113 ( ) 1
2.
(
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300
      (1999. 2. 8, 5852 ) ,
          18 21
   ( 3 )
         50
                     300
          .( 4
                     21
       .( 5 )
```

, 10 (6)

30

3.

1		
가	?	

4.

가.

.

5.

6.

7.

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안	고 라 케OCC 중			
번 호	관련제266호			
의 결	2004. 7. 16			
년월일	(제113회)			

제출년월일 2004. 7. 2 제 안 자 부천시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에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제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교묘히 피하면서 위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
-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을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한다고 차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수의 제한과 기준적용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

2. 주요골자

○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"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 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"는 것을 "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4차 위반 부터는 최고 부과금액을 부과한다"로 수정

(안 제4조 및 별표)

•

4 ()

[] 2. 4

[] [] ____(4) _____(4) () (:) 2 3 1. 18 26 1 50 100 300 2. 21 26 1 100 200 300 2 . 1.() 1. 2.

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

의 안	제266호			
번 호				
의결년월일	2004. 7. 16			
의결선절일	(제113회)			

제출년월일 2004. 7. 2 제 안 자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(1999. 2. 8, 법률 제5852호)되어, 이에 맞추어 과 태료 부과·징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을 정함.(안 제3조)

나. 위반행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.(안 제4조 및 별표)

다.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도록 정함.(안 제5조)

라.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, 미납자에 대하여는 10일이내의 기간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함.(안 제6조)

, 10

.(6)

```
[ ]
 1 (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 26
 2 (
 3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    )
 1.
      18
 2.
     21
 4 (
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26 1
 5 (
                        26 2
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21
       1
```

. , 15 10

7 ()

8 ()

9 ()

____(4)

					(:)		
					1	2	3
1.	18	26	1	1	50	100	300
2.	21	26	1	2	100	200	300

1. .

2. 4 .